



음성출력함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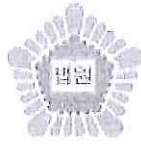
광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가단 부동산인도
 원 고 서울
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산경
 담당변호사 이석형, 김선종, 이소정
 피 고 광주
 변 론 종 결 무변론
 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
 - 나.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 - 다.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- 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

